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23.(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31호
- 나. 제 출 자 : 장규권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며,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11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5. 4. 25.~ 5. 15.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삭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함.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상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함
- 2)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시행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3)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4)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5)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우리나라 정책 기조 변화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관계법령의 제·개정 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17. 11. 18 일부개정	2022. 12. 31 전부개정	2024. 1. 1 시행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 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 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함	→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⑧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